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구분		분류기준
1.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물품	가. 신품	사용되지 않은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재난관리물품
	나. 중고품	사용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재난관리물품
	다. 정비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재난관리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재난관리물품)
2. 활용 불가능한 재난관리물품	가.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재난관리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수리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사용하고 남은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다시 활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비고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능검사의 방법으로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시험,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